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수행 업무를 보육 관련 정책연구, 보육교직원 연수, 자격 관리 등 종전의 보육정책 지원 업무에서 유아교육 정책 지원까지 확대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의 결격기간과 자격취소 후 자격재교부 금지기간의 상한을 규정하고, 그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16조 제5호·제6호·제8호, 제48조제2항제2호).
-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직원의 자격재교부 금지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자격을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3항 신설).
- 어린이집에 임면되는 보육교직원의 결격사유·결격기간, 자격정지·자격취소, 자격재교부 금지기간 및 교육명령과 관련한 정보의 관리 지원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2 신설).

II. 검토의견

안 제16조제5호·제6호·제8호 및 제48조제2항제2호에서는 아동학대 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어린이집 근무의 결격기간과 자격취소 후 자격재교부 금지기간(이하 “결격기간등”)의 상한을 법률로 규정하고, 그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세부적인 결격기간 및 자격재교부 금지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은 무엇을 기준으로 결격기간등을 달리 정할 것인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교육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수범자가 하위 법령에 규정될 기준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결격기간등의 상한을 법률에서 정하고 그 범위에서 범죄의 경중 등에 따라 결격기간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경우, 그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임¹⁾을 고려하여 교육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제16조(결격사유)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5. ----- -----

1) 그 외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과 같이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한 기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는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음.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 이내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생략)

8.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6. -----

-----20년 이내에서 범
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7. (현행과 같음)

8. -----

-----1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
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9. (생략)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 (생략)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1. (생략)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	----- 9. (현행과 같음)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

그 밖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법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Ⅲ. 관계기관 의견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는 안 제8조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공공기관 기능확대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영유아보육법」에 속한 제도를 확장하여 「유아교육법」 체계에 속한 제도를 포섭하는 입법이 될 수 있다는 점,

유보통합 시 교원의 자격, 교육과정 체계 및 각 기관의 기능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완료되기 전에 특정한 기관의 기능을 선행적으로 확장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경우 향후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관 간 제도의 중복 및 충돌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바 체계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전문위원 이 세 진)